

일본의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와 시사점*

Japan's Electronic Provision System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ata and its Implications

권 중 호**
Kwon, Jong-Ho

목 차

- | | |
|-------------------|---------|
| I. 서설 | IV. 시사점 |
| II. 개정 내용 | V. 결론 |
| III. 전자제공제도의 이용현황 | |

본고는 일본에서 2019년 회사법개정으로 도입한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에 관해 검토한 것이다. 동 제도는 주주총회자료를 조기에 제공하여 주주와 회사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총회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의 웹사이트 등에 올리고, 주주에게 그 웹사이트의 주소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종래에는 주주총회자료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이 개정으로 회사는 주주의 개별 동의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자료를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주총회자료의 웹사이트 게재도 주주총회 3주 전에 하도록 하여 종래보다 1주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주를 배려하여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주주총회자료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이용을 의무화하였다.

동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 맞이하는 2023년 3월 주주총회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자제공제도의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주주총회자료도 법정기한보다 더 일찍 제공

<https://doi.org/10.35148/ilsilr.2024..57.3>

투고일: 2024. 3. 31. / 심사완료일: 2024. 4. 23. / 게재확정일: 2024. 4. 25.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

하는 기업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서면교부청구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동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장회사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특히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등에 관한 자료에 관해서는 일본의 전자제공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러면서도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에는 주주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자료를 인터넷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일본의 전자제공제도는 주주총회자료를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쇄나 우송에 따른 비용의 절약은 물론이고 대량의 정보를 저비용으로 조기에 발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후자의 장점은 주주 층의 중심을 이루는 기관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의안의 분석 등에 필요한 시간의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은 전자주주총회나 전자투표제도의 기능화나 효율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대부분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제도, 전자투표제도, 전자주주총회, 서면교부청구제도

I. 서설

일본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상장회사의 주주 층의 중심을 이루는 기관투자자의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코드¹⁾와 스튜어드십 코드²⁾이다. 동 코드에서는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투자자와 회사 경영자간의 건설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각의 결정을 통해 투자자와 회사 간의 건설적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총회 정보에 관한 질의 향상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³⁾

1) 東京証券取引所,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 会社の持続的な成長と中長期的な企業価値の向上のために」(2018년 6월 1일 개정) 기본原則 5 参照.

2) 「『責任ある機関投資家』の諸原則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投資と対話を通じて企業の持続的な成長を促すために」(2017년 5월 29일 개정) 原則 5 参照.

3) 内閣官房 「未来投資戦略二〇一八～『Society 5.0』『データ駆動型社会』への変革」(2018년 6월 15일閣議決定) 131頁 参照.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일본은 2019년 12월 회사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정관의 정합에 기하여 주주총회의 자료를 자사의 홈페이지 등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주주에게 그 웹사이트의 주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주주총회자료가 적법하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다(일본회사법(이하 생략) 제325조의2~제325조의7 등). 이하에서는 동 제도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1. 도입의 의의

1.1 건설적 대화의 촉진

투자자와 회사간의 건설적 대화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① 하나는 건설적 대화는 주주총회의 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총회의 장을 전제로 할 경우 주주와 회사와 실효성 있는 대화를 하려면 주주총회의 자료가 충실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행제도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② 또 하나는 설령 충실한 자료가 제공되더라도 그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먼저 ①과 관련해서는 충실한 자료를 주주에게 제공하려면 인쇄나 우송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나 정보의 양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는 서면보다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데, 기존의 전자제공제도에는 전자제공을 위해서는 주주의 개별 승인을 얻어야 하거나(제299조 제1항·제3항, 제301조 제1항·제2항, 제302조 제1항·제2항, 제437조, 제444조 제6항, 회사법시행규칙 제133조 제2항, 회사계산규칙 제133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개별 승인이 없더라도 웹사이트 게재로 전자제공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회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33조 제3항, 회사계산규칙 제133조 제4항, 제134조 제4항)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②와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공개회사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 비공개회사는 1주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제299조 제1항) 특히 건설적 대화에 있어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많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주주총회 개최일이 집중하는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주주총회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1.2 인쇄나 우송에 따른 비용 절감과 충실한 정보의 조기 제공

그리하여 개정법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면 주주의 개별 승낙이 없더라도 웹사이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자료를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웹사이트 게재 등도 주주총회 3주 전 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발송일(주주총회 2주 전) 중 빠른 날에 할 수 있도록 하여(제325조의3 제1항) 주주총회자료를 종래보다 1주일 먼저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서면제공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충실한 자료를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나 하이퍼링크 등을 통해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주주의 입장에서 서면제공에 비해 조기에 충실한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건설적 대화나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번 개정의 의의에 관해 서면제공에 따른 비용의 절감(인쇄 및 우송비용의 절감)과 함께 주주총회를 건설적인 대화의 장의 하나로 수용하여 건설적 대화의 기반이 되는 주주총회자료를 주주에게 조기에 그리고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⁴⁾ 즉 개정법의 의의는 주주와 회사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충실한 정보를 조기에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다⁵⁾는 것이다.

2. 기존 제도와 차이

개정법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신제도)와 기존의 전자제공제도와 차이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일본의 전자제공제도에는 신제도를 포함하여 기존의 두 제도까지 총 세 개의 제도가 있는데, 신제도는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총회 자료의 전부를 전자적 방법(웹사이트 등에 게재)으로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나 소집통지 자체는 문서로

4) 森まどか, 電子提供制度下における株主総会, 商事法務 第2352号, 2024, 25頁; 尾崎安央, 株主総会資料の電子提供制度, ジュリスト, 第1542号, 2020, 22頁.

5) 松井秀征, 株主総会資料の電子提供制度, 商事法務 第2230号, 2020, 38頁.

하여야 하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기존의 제도 중 하나는 ① 주주의 개별 승낙을 얻어 주주에 대해 주주총회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301조 2항). 이른바 주주의 개별 승낙에 의한 전자제공제도인데, 이 제도는 주주총회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개별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과 주주의 개별 승낙이 있으면 소집통지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점(제299조 제3항)이 신제도와 다르다. 또 하나는 이른바 ② 웹 공시에 의한 간주제공제도이다. 즉 정관의 정함에 기하여 주주총회자료 중 일부를 자사의 웹사이트 등에 올리는 것으로 주주에게 해당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회사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성령(회사법시행규칙, 회사계산규칙)상의 제도이고, 유형적으로 주주의 관심이 특히 높은 사항⁶⁾에 대해서는 전자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신제도와 다르다. 하지만 전자제공은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의 개별 승낙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신제도와 같다.

일본의 전자제공제도에는 이처럼 신제도와 기존의 두 제도를 포함하여 모두 세 유형의 제도가 있는데, 신제도는 기존의 두 제도가 갖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한 것이다.

먼저, ①의 주주의 개별 승낙에 의한 전자제공제도의 경우에는 전자제공을 위해서는 모든 주주의 승낙(동의)이 필요하므로 특히 주주의 수가 많은 상장회사에서는 모든 주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승낙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효적이지 못했고, 실제로 이용률도 매우 낮았다.⁷⁾ 신제도는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개인별 승낙이 없어도 전자제공을 가능하도록 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신제도의 도입을 강제하여 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②의 웹에 의한 간주제공제도의 경우는 주주의 개별 승낙이 없어도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전자제공이 가능하지만 그 대상이 주주총회 자료의 일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었다.⁸⁾ 신제도에서는 전자제공의 대상을 주주총회자료의 전부로

6)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중 의안이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실제 주주총회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사항은 전자제공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회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33조 제3항, 회사계산규칙 제133조 제4항, 제134조 제4항).

7)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고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의 5%에 불과하고,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장회사이더라도 그 발송비율은 1% 미만이라고 한다(商事法務研究会編, 2019版株主總會白書, 商事法務 第2216号, 2019, 64頁, 65頁).

8) 이 제도는 성령 상의 제도이고 유형적으로 주주의 관심이 특히 많은 사항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코로나사태로 주주총회 집중기에 결산·감사업무에 문제가 생기자 2020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신제도 하에서도 소집통지 그 자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주의 승낙이 있으면 ①의 제도처럼 소집통지도 전자적인 방법(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대로이다. 이하 개정법의 내용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II. 개정 내용

1. 정관의 정함

전자제공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한다(제325조의2 전단). 이 경우 정관에는 그 취지를 규정하면 족하고(제325조의2 후단) 게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 해당 주소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법문상은 전자제공제도를 전자제공조치라고 하는데, 전자제공조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주주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것⁹⁾을 말한다(325조의2). 회사가 자사의 홈페이지 등의 웹사이트(자사의 웹사이트가 아니어도 상관 없음)에 주주총회자료에 관한 정보를 전자 데이터화해서 올리면 주주는 그것에 접속하여 주주총회자료를 입수하게 된다. 다만 불특정다수의 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요구되는 전자공고와는 달리 전자제공조치는

5월에 한시적인 조치로서 회사법시행규칙 및 회사계산규칙을 개정하여 동 제도의 대상에 회사가 사업연도말일에 공개회사인 경우 ①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중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의 경과 및 그 효과, 대처해야 할 과제 그리고 ②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였다. 그 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종기(終期)를 2021년 9월 말일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2023년 2월로 연기하였다. 종기를 2023년 2월로 한 것은 2023년 3월부터는 신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渡辺論, “商事法をめぐる動向”, NBL 第1209号, 2011, 14頁).

- 9)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이란 ① 회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나(口)목의 방법 중 ② 인터넷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의한 조치를 말하는데(시행규칙 제95조의2),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①의 방법은 수신자가 파일의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222조 제2항). 따라서 전자제공조치사항은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주주총회자료 등을 게재하는 웹사이트에 관해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사의 웹사이트 외에 다른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도 허용된다(渡辺論 外3, “会社法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の解説 [V・完]”, 商事法務 第2254号, 2021, 16頁).

해당 회사의 주주만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되므로(제325조의2 전단) 전자제공조치에 있어서는 ID나 패스워드 등을 요구하여 주주만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자제공제도의 시행일에 정관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전자제공제도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¹⁰⁾

하지만 전자제공제도에 관해 정관에 규정을 두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전자제공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소집통지시에 의결권행사서면을 교부한 경우이다(제325조의3 제2항). 이때에는 의결권행사서면의 직접 교부에 의해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되어야 할 정보가 주주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개정법 하에서도 서면투표제도는 인정되는데, 실무에서는 의결권행사서면의 사전수집이 관행화되어 있고, 의결권행사면이 주주총회 입장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둘째, EDINET¹¹⁾을 통해 유가증권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회사가 전자제공조치 개시일까지 다음 2.의 ①~⑦사항을 EDINET에 공시한 경우이다(제325조의3 제3항). 이 경우에는 주주가 EDINET에 접속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자료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자제공 대상 정보

전자제공조치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자료에는 주주총회참고서서류, 의결권행사서면(서면으로 송부되지 않은 경우), 계산서류¹²⁾와 사업보고서, 그리고 연결계산서류이다(제325조의2 각호). 그 외에도 이사회설치회사나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실시회사의 경우에는 ① 주주총회 소집시에 정해야 하는 사항(제298조 제1항 각호),¹³⁾ ② 서면

10)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19년 법률 제71호) 제10조 제2항; 사채, 주식등의 진체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2 제1항.

11) EDINET이란 Electronic Disclosure for Investors' NETwork의 약자로서 내각부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공시서류제출자가 사용하는 단말 및 금융상품거래소·인가금융상품거래업협회가 사용하는 단말을 네트워크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30의2). 상세는 黒沼悦郎, 金融商品取引法, 有斐閣, 2016, 88頁 参照.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인 DART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12) 계산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자본등변동계산서 및 개별주기표로 구성된다(제435조 제2항, 회사계산규칙 제59조 제1항).

13)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제298조 1항). ①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1호), ② 주주총회의 의제(2호), ③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서면투표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뜻(3호), ④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뜻(4호), ⑤ 그 외 법무성령(시행규칙 제63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5호)이

투표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참고서류와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제301조 제1항) 및 의결권행사서면(이 경우는 주주가 출력해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③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제302조 제1항), ④ 주주제안으로 의안의 요령에 관한 통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요령(제305조 제1항), ⑤ 이사회설치회사의 정기총회의 경우에는 계산서류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제437조), ⑥, ⑤의 경우로서 회사감사인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연결계산서류에 기재·기록하여야 할 사항, ⑦, ①~⑥사항을 수정한 때에는 그 뜻과 수정전 사항에 관해 전자제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25조의3 제1항 각호).

3. 소집통지 등의 특칙

전자제공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집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제299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첫째, 비공개회사이라도 전자제공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공개회사와 마찬가지로 2주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제325조의4 제1항). 전자제공조치를 취할 정도의 비공개회사라면 비공개회사로서의 특칙(제299조 1항 괄호. 1주일 전까지)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소집통지의 기재사항은 비용문제를 고려하고 전자제공조치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98조 제1항 각호 사항¹⁴⁾ 이외에 ① 전자제공조치를 취하고 있는 때에는 그 뜻, ② EDINET의 특례를 이용하고 있는 때에는 그 뜻, ③ 그 외 전자제공조치에 관한 웹사이트의 주소 등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¹⁵⁾을 소집통지에 기재·기록하여야 한다(제325조의4 제2항).

그것이다. 시행규칙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매우 많은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의 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인 경우 해당일이 전사업연도의 정기총회일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 ③의 서면투표를 정한 경우에는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는 것에 동의한 주주에 대해 의결권행사서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서면에 의한 인쇄가 가능해야 함)에는 그 뜻, ② 의제가 예를 들어 임원등의 선임, 임원 등의 보주 등인 경우에는 해당 의제에 관한 의안의 개요, 의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뜻 등이다.

14) 위의 주 참조.

15)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시행규칙 제9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제공조치를 취한 경우 및 EDINET의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① 전자제공조치를 취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URL)와 ② 주주가 전자제공조치를 취하고 있는 페이지를 용이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주가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②는 예컨대 주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그인을 해야

셋째, 소집통지의 방법인데, 이사회설치회사이거나 전자제공조치를 취하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를 위하여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인정한 경우에는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99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경우이더라도 주주의 개별 동의가 있으면 해당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소집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그리고 전자제공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주주가 주주제안으로 의안요령통지청구권을 행사하면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에 기재·기록하는(제305조 제1항) 것이 아니라 전자제공조치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제325조의4 제4항).

4. 전자제공조치의 기간

전자제공제도를 도입한, 이사회설치회사나 그 이외의 회사로서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의 날 또는 소집통지발송일 중 빠른 날(이를 ‘전자제공조치개시일’이라 함)로부터 주주총회 종료후 3개월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이를 ‘전자제공기간’이라 함) 계속하여 전자제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25조의3 제1항). 전자제공의 경우에는 인쇄나 우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발송일(주주총회 2주전)보다 일주일을 앞당긴 것이다.

그리고 웹사이트 등 전자제공조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제공기간의 종기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제831조 제1항)에 맞추어 3개월(우리나라의 경우 2개월)로 하였다.

5. 서면교부청구

한편, 인터넷 등 전자매체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주를 배려하여 서면교부청구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주주는 회사에 대해 소집통지의 발송시에 전자제공조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를 ‘전자제공조치사항’이라 함)을 기재한 서면(전자조치사항기재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의5 제1항). 다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라면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방법과 같은 검색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EDNET의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집통지 기재사항은 전자제공조치를 취한 경우(제1호)와 거의 동일하다(동조 제1항 제2호). 상세는 渡辺論 外3, 前掲論文, 16頁 参照.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을 승인한 주주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동조 제1항 괄호). 이들은 전자매체의 사용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면교부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소집통지시에 전자제공조치사항 기재서면을 해당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325조의5 제2항). 다만 의결권 행사에 관해 기준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준일의 주주는 해당 기준일까지 서면청구를 하여야 한다(제325조의5 제2항 괄호).

한편, 회사는 정관으로 전자제공조치사항 중 교부서면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325조의5 제3항).¹⁶⁾ 전술의 웹 공시에 의한 간주제공제도의 대상인 사항을 전자제공제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신제도 하에서도 웹 공시에 의한 간주제공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서면교부의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일단 서면청구를 하면 그 후 모든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 포함)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제325조의5 제1항). 그러나 이렇게 되면 회사는 청구주주가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청구 주주가 누적 되면 전자제공제도의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전자제공제도의 보급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교부청구를 실효시키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서면교부청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서면교부를 종료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최고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제325조의5 4항). 해당 주주가 최고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고기간이 경과하면 서면교부청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동조 제5항).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의제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대해 다시 동일한 통지 및 최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그리고 최고기간의 경과로 서면교부청구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후 해당 주주는 다시 서면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16) 회사법시행규칙 제95조의4에서는 전자제공조치사항 기재서면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기재를 요하지 않는 사항의 범위에 관해서는 웹공시에 의한 간주제공제도상의 주주총회참고서류 등에 기재를 요하지 않는 사항(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33조 제4항, 계산규칙 제133조 제4항, 제134조 제4항)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제공제도 하에서 굳이 서면교부를 청구하였다면 해당 주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웹공시에 의한 간주제공제도상 기재를 요하지 않는 사항 중 사업보고서의 회사임원의 책임한정계약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121조 제3호) 및 연결계산서류 중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은 전자제공조치사항 기재서면에 기재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2호 가(1)목·제4호). 상세는 渡辺論 外3, 上掲論文, 17頁 参照.

6. 전자제공조치의 중단

전자제공조치기간 중에서 서버가 다운되어 주주가 주주총회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해당 자료가 전자제공조치에 올려진 상태에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조작되어 다른 정보가 전달된 경우(이를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라 함), 이에 관한 회사의 과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회사로서는 가혹하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개정법은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자제공조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325조의6). 즉 그 조건은 ①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한 것에 관해 회사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회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1호), ②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한 시간의 합계가 전자제공조치기간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않을 것(2호), ③ 전자제공조치개시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에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한 시간의 합계가 해당 기간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않을 것(3호), ④ 회사가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한 것을 안 후 신속하게 그 사실,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의 내용에 관해 해당 전자제공조치에 올려 전자제공조치를 취할 것(4호), 이다.

III. 전자제공제도의 이용현황

2022년 9월 시행된 전자제공제도는 2023년 3월 총회부터 상장회사에서 적용되고 있다. 시행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주총회에 관한 자료인 ‘2023년판 주주총회백서’¹⁷⁾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전자제공제도가 이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전자제공제도 적용회사(상장회사) 1780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7) 商事法務研究会編, 2023年版株主總會白書, 商事法務 第2344号, 2023.

1. 전자제공조치의 개시일

전자제공조치의 개시일은 ‘22일 전’이 가장 많은 390사(21.9%)이고 법정기한인 ‘21일 전’이 274사(15.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조기공시의 움직임은 자본금의 규모가 큰 상장회사에서 현저한데,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소집통지발송 전에 공시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던 관행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웹사이트게재일이 전자제공조치개시일로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규모가 작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022년 백서에서 소집통지발송전 웹사이트게재에 관한 질문에서 ‘소집통지발송 전에는 게재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회사에서는 법정기한(3주전)으로 웹사이트게재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거래소 상장규정¹⁸⁾에서 법정기한보다도 조기에 공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소집통지의 발송일

전자제공조치개시의 법정기한이 총회일의 3주 전(제325조의3 제1항)인 데 반해, 전자제공조치가 취해진 웹사이트의 URL을 알려주는 소집통지(제325조의4 제2항, 제299조 제4항, 제298조 제1항) 발송의 법정기한은 2주 전이다(제299조 제1항). 이처럼 전자제공조치개시일과 소집통지발송일을 다르게 한 것, 즉 전자제공조치개시일을 소집통지발송일보다 1주 빠르게 한 것은 전자제공조치개시에는 시간이 그다지 소요되지 않는데 반해 소집통지발송이나 서면교부청구(제325조의5)을 한 주주에 대한 전자제공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에는 인쇄나 발송 절차 등으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양자를 동시에 하도록 하면 실무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집통지발송일이 전자제공조치개시일보다 일주일 늦으면 주주가 전자제공조치에 접속하게 되는 것은 결국 소집통지를 수령한 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주주에 대한 정보의 조기제공은 기관투자자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기관투자자라면 소집통지 수령 전이더라도 자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¹⁹⁾

18) 동경증권거래소유가증권상장규정 제446조, 동규정시행규칙 제437조 제3항.

19) 森まどか, 前掲論文, 35頁.

소집통지발송일의 법정기한인 14일 전보다 조기에 소집통지를 발송한 회사는 87.4%에 이르고, 시장별로는 프라임 시장이 90%, 스탠더드 시장이 80%, 그로스 시장이 70% 정도이다.²⁰⁾ 이처럼 조기 소집통지의 비율이 높은 것은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소집통지의 조기발송을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²¹⁾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에서도 상장회사에 대해 소집통지의 조기발송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²²⁾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소집통지발송의 조기화 현상은 본 제도가 시행된 2023년도 특유의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전자제공조치개시일의 법정기한(21일전) 이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한 회사는 전체의 약 45%이고, 시장별로는 프라임 시장이 55.4%, 스탠더드 시장이 30.5%, 그로스 시장이 11.5%이다.

3. 전자제공조치의 내용

본 제도의 도입으로 회사는 인네넷을 통해 컬러표시나 동영상, 하이퍼 링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자제공조치사항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제공조치사항에 관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취하고 있지 않다’는 회사가 5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조치를 취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내용을 보면 ‘컬러화’가 36.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그래프·표 등의 사용이 35.1%, 관련정보에의 하이퍼링크 설치가 10.1%, 레이아웃 변경 5.8% 순이었다. 그런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회사가 많은 이유에 관해 본 제도가 2023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대응에 그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열람의 경우 PDF 형식보다는 HTML 형식이 보기 쉬운데, HTML 형식으로 작성한 회사는 0.6%에 불과하다.

20) 2023년판 주주총회백서 76쪽(도표 52) 참조. 일본의 프라임 시장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스탠더드시장은 코스닥, 그로스 시장은 코넥스 시장에 유사하다.

21) 동경증권거래소유가증권상장규정 제446조, 동규정시행규칙 제437조 제2항.

22)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보충원칙 1-2 ②.

23) 2023년판 주주총회백서 74쪽(도표 49) 참조.

4.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에 대한 대책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복수의 웹사이트에 게재가 1640사(92.1%)로 가장 많고, 이어서 웹서버 로그를 통한 기록이 458사(25.7%), 전자공고조사기관의 이용이 122사(6.9%), EDINET 특례 이용이 42사(2.4%)의 순이었다. 복수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제공조치를 취할 경우 어느 한쪽의 사이트에서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면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거래소의 웹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복수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로 평가되고 있다. EDINET 특례(제325조의3 제3항)를 이용하려면 주주총회의 3주 전에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것을 이용하면 전자제공조치는 취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장 확실한 중단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제공조치개시일과 유가증권보고서의 제출기한이 동일하여 동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²⁴⁾ 여기 42사는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다.²⁵⁾

5. 전자제공조치사항을 게재한 웹사이트

전자제공조치사항을 게재하는 방식은 ① ‘자사홈페이지(자사 HP) + 거래소 웹사이트’가 1092사(61.3%)로 가장 많고, ② 그 다음이 ‘자사 HP + 거래소 웹사이트 + 기타’가 491사(27.6%), ③ ‘자사 HP’가 101사(5.7%), ④ ‘자사 HP + 기타’가 41사(2.3%) 순이다.

이처럼 전자제공조치를 취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자사 HP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 웹사이트는 상장회사에 대해 무료로 제공하므로 거래소 웹사이트를 자사 HP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전자제공조치중단과 관련하여 자사 HP와 거래소 웹사이트에 동시에 게재하면 중단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므로 가장 이용률이 높다. 기타는 인쇄회사 등 제3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24) 森まどか, 前掲論文, 26頁.

25) 2023년 주주총회백서, 75쪽.

6. 전자제공조치의 대상

6.1 의결권행사서면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본래는 전자제공조치의 대상이지만(제325조의3 제1항 제2호),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제공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제325조의3 제2항). 그런데 조사대상회사 중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제공조치의 대상으로 한 회사는 전무하다. 그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서면교부청구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한 명이더라도 주주가 서면교부를 청구하면 의결권행사서면을 작성하여 해당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면 제작을 위한 고정비용이 드므로 처음부터 주주 전원에게 의결권행사서면을 교부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의결권행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제공조치의 대상으로 하면 주주가 서면투표를 할 시에 스스로 의결권행사서면을 출력하여 인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꺼려하여 의결권행사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대부분의 회사는 의결권행사서면을 주주총회 입장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총회 당일 입장절차 상의 번거로움을 해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가 활성화되고 입장권에 대체할 수단이 강구되면 의결권행사서면도 전자제공조치의 대상으로 되는 방향으로 실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6.2 접속통지에 추가된 임의제공자료

전자제공제도는 주주총회자료를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고 그 주소(URL)를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접속통지)을 기본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접속통지만을 송부한 회사는 109사로 6.1%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율이 낮은 이유는 본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상황에서 접속통지만 주주에게 송부하게 되면 주주의 혼란이 우려되고, 의결권행사비율의 저하도 예상되므로 이를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접속통지와 함께 서면교부청구주주에게 송부되는 자료를 모두 송부한 경우(풀 셋 송부)가 1153사로 64.8%에 이르고, 그 자료 중 중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송부한

경우(요약 송부)는 408사로 20.7%이다. 접속통지만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지만 주주의 서면교부청구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면 이 방식이 비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봤을 수도 있고, 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해이므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회사가 많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²⁶⁾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서면교부청구가 있었던 회사의 비율은 회사가 규모가 클수록 증가한 반면에,²⁷⁾ 플셋트 송부의 비율은 회사규모가 클수록 감소하고 그 대신에 요약송부가 증가하고 있다²⁸⁾는 점이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인터넷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주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고 비용면에서는 플셋트 송부보다는 요약송부의 쪽이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요약송부의 경우에는 별도로 ① 요약본을 만들어서 송부하는 것과 ② 전자제공조치사항 중에서 발췌하여 그것을 송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업무량이 적고 업무 과정에서 실수의 위험을 줄이는데 유리한 ②의 방법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서면교부청구를 한 주주의 수

서면교부를 청구한 주주는 예상외로 수가 적다. 서면교부청구를 한 주주가 없었던 회사는 15.3%에 이르고, 서면교부청구가 있었던 회사의 경우에도 그 주주의 수는 의결권을 갖는 총주주수에 대한 비율이 0.1% 이하가 531사(29.8%), 0.5% 이상이 453사(25.4%), 0.5% 이하가 159사(8.9%) 순이었다. 서면교부청구제도의 이용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동 제도의 존재의의를 상실할 수 있으나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내년 이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사전에 전주주에 대해 서면교부청구서를 교부하고, 청구절차를 간소화한 회사의 경우에는 5% 정도의 청구가 있었다고 하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면 청구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주주의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26) 森まどか, 前掲論文, 28頁.

27) 2023년판 주주총회백서 (도표 58) 82쪽.

28) 2023년판 주주총회백서 (도표 54) 78쪽.

IV. 시사점

일본의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의 취지는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자료를 조기에 충실하게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주주와 회사 간에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정법은 ① 전자제공에 관한 사전동의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사후서면교부청구제를 도입하였고, ②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제공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③ 전자제공의 대상자료를 주주총회자료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료의 제공시기를 주주총회 2주 전에서 3주 전으로 하여 기존보다 1주를 앞으로 당겼다. 이하 순차적으로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전동의제도의 폐지와 사후서면교부청구제도의 도입

1.1 사전동의제도 폐지의 필요성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의 장점은 제공하는 자료의 양과 형식, 다양성에 있어서 제약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서면제공에서는 인쇄나 우송 및 봉인 발송사무와 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면의 크기나 면수의 제약 속에서 기재사항을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제공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서면제공에서는 비용문제로 어려웠던 컬러 인쇄나 그래프나 도표 등을 사용한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동영상이나 하이퍼 링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서면제공에 비해 정보의 양과 질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그 비율은 크게 높지는 않지만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임의기재사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⁹⁾ 주주로서도 서면제공에 비해 충실한 자료를 조기에 제공받을 수 있음으로써 회사와의 실효성 있는 대화나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주주총회의 자료의 전자제공제도는 회사나 주주의 입장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그 이용을 제약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전자제공제도는 회사가 쉽게 이용

29) 林良樹/白木絵利加, “電子提供制度下の役員選任議案の留意点—本年6月総会の選任状況を踏まえて—”, 商事法務 第2311号, 2022, 85頁.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은 주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전자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동의제는 주주 수가 많은 상장회사에서는 사실상 전자제공제도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이를 폐지한 일본의 개정법은 타당하다고 본다.

1.2 서면교부청구제도 도입의 필요성

하지만, 전자제공을 의무화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인터넷 등 전자매체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주가 존재하는 이상³⁰⁾은 이에 대한 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방안은 주주가 원하면 그 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즉 서면청구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서면청구 주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전자제공에 있어서는 법정자료 이외에도 하이퍼 링크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제공하는 자료도 많을 터이지만 서면청구는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서면청구주주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뿐만 아니라 인쇄 등에 따른 비용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정정보만 제공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전자제공의 경우에는 서면제공에 비해 제공정보를 늘리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제공정보가 많을 경우에는 열람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주주들이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정자료와 임의자료를 구분하는 등 정보제공 방법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전자제공의 의무화와 정보제공기간의 확대

2.1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 층의 중심은 기관투자자인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주주와

30) 일본총무성이 2019년 5월 31일에 공표한 2018년 통신이용동향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자층별 인터넷이용율(과거 1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60~69세는 78.6%, 70~79세는 51.0%, 80세 이상은 21.5%이다(竹林俊憲 外4, “令和元年改正会社法の解説”, 商事法務 第2222号, 2020, 10頁.)

비교되는 기관투자자의 특징으로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월 스트리트 룰이 작동하지 않아 주주 활동에 적극적이며, 정보분석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³¹⁾나 한국판 기업지배구조 코드라고 할 수 있는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모범규준³²⁾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투자자와 회사와의 건설적 대화를 강조하면서 그 주체로 기관투자자를 지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기관투자자의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기관투자자가 회사와 건설적인 대화를 하려면 회사의 사정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업에 관한 충실한 정보의 사전 입수는 필수이다. 그리고 회사와의 대화는 주주총회의 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많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로서는 (평상시의 대화는 상징성이 있는 특정 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통상은 주주총회와 관련한 대화가 주를 이룰 것이다. 특히 주주총회가 집중하는 상황에서는 자료의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충실한 자료의 조기 제공을 취지로 전자제공제도를 의무화하고 자료제공시기를 주주총회일 3주 전으로 앞당긴 일본의 개정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2.2 비상장회사

한편, 개인주주 중심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자제공제도의 도입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개인주주는 통상 지분비율이 적으므로 주주총회의 참석에 소극적이고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도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사치에 불과하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를 위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제도에 있어서 주주에게 제공되는 참고자료(368조의3 제2항, 368조의4 제3항)는 바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형해화된 주주총회를 정상화하고 주주총회 참석에 소극적인 주주에 대해 사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주총회 출석을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³³⁾ 바로 그 점에서 주주에게

31) 김병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33권 제3호, 2019, 304쪽;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7, 6쪽.

32) 한국ESG기준원, ESG 모범규준(2021), 03 지배구조모범규준 ⑤ V. 3.

양질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와 주주 간의 건설적 대화를 촉진한다는 전자제공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이처럼 전자제공제도와 서면투표·전자투표의 참고자료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양 제도는 양립하면서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장회사에서는 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충실한 정보를, 주주총회가 형해화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총회출석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컨대 서면투표를 채택한 회사에서는 의결권행사서면은 소집통지와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되 참고자료는 전자제공제도를 이용하여 주주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의결권행사서면까지도 참고자료와 함께 전자제공제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에는 의결권행사서면은 서면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소집통지 등

3.1 소집통지

일본의 경우 전자제공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일본회사법 제299조 2항 2호),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를 하려면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일본회사법 동조 3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소집통지를 포함하여 주주총회의 모든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³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가능하다(제363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의결권주식의 10분의 1 이하 소유)에 대한 통지는 금융감독원(DART)이나 거래소(KIND)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전자

33) 松井, 前掲論文, 2230頁.

34) 소집통지에는 298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기록)할 필요가 있다(299조 4항). 다만 전자제공조치를 취한 회사의 경우에는 298조 1항 5호의 사항(주13 참조)에 관해서는 소집통지예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5호의 사항은 전자제공조치에 게재되기 때문이다. 소집통지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설치회사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이사회비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소집통지방법에 관해 특별한 규제가 없다. 다만 이사회비설치회사이더라도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설치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제299조 제2항 제1호, 제4항).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제542조의4 1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리고 상장회사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³⁵⁾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제542조의4 제2항). 이때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³⁶⁾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제542조의4 제3항 본문)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통지·공고는 면제된다(제542조의4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1조 제5항).³⁷⁾

이상을 정리하면, ①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나(363조 1항), ②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전자공고로 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다만 ②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542조의4 1항). 그리고 상장회사에서 ③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때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통지에 대신하여 공고로 갈음할 수 있고(542조의4 2항), ④ 사외이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전자제공)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지나 공고에

3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영 31조 3항)

1.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
3.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3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영 31조 4항).

1. 사외이사,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42조의9 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내역
3.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7) 542조의4 3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에 주목하면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에 관한 사항(542조의4 2항)도 전자제공(542조의4 3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과 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을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 본문처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갈음할 수 있다(542조의4 3항).

이처럼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전자공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그 대신에 대상을 상장회사의 소액주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주주나 상장회사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에게는 전자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 또한 전자제공은 상장회사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사외이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공고가 허용되나 법문상은 공고가 전자공고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³⁸⁾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나 제도가 타당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3.2 사전동의제도의 타당성

첫째,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시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2001년 7월 상법 개정의 때이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 보급률이 낮았고 PC 등 전자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때이므로 전자매체의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사전 동의는 필요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자매체의 이용에 익숙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주 수가 많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서면통지는 주주가 원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때에도 일본처럼 서면통지로 인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제기능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³⁹⁾

3.3 전자공고와 전자서면에 의한 통지 간의 차별의 타당성

둘째, 주주의 동의 유무에 있어서 전자공고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간의 차별의 타당성이다. 주주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전자공고의 대상을 소액주주로 한정하고

38) 542조의4 1항에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동조 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9) III. 5. 서면교부청구제도 참조.

있는데, 그 이유가 소액주주의 경우는 지분비율이 적으면서 그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고 회사의 주주총회 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자서면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도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때에는 주주의 동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함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와 전자공고는 직접공시와 간접공시라는 공시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시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이나 비용면에서도 주주의 동의 유무를 결정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4 제공대상제한의 타당성

셋째, 주주총회에서 참고할 자료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전자제공)을 허용한다면 그 대상을 사외이사 등에 관한 것(제542조의4 제3항)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사외이사에 관한 서류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서류는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영 31조 5항), 주주총회의 결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주가 아니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⁴⁰⁾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것에 주주가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으면 충분할 터인데 굳이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주주총회 관련 자료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총회 소집통지서에 의결권 행사서면과 참고자료⁴¹⁾

40) 일본의 전자제공제도의 경우 주주에게 ID나 패스워드를 요구하여 주주만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해당 회사의 주주만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되기 때문이다(일회 제325조의2 전단).

41) 참고자료란 주주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서 의안을 상정할 때에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김영주, 주식회사법대계 II, 제4판, 한국상사법학회, 2022, 255쪽). 그러나 상법에서는 참고자료에 기재되는 정보에 관해 정함이 없는데, 주주총회에서 다루어 지는 논의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정기총회에서 재무제

를 첨부하여야 한다(제368조의3 제2항). 정기총회의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자료는 물론이고,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제447조), 그리고 영업보고서(제447조의2), 나아가서는 감사보고서(제447조의4) 등도 주주총회의 참고자료나 결의를 위한 자료로서 제공될 것이다(제449조 참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나(제542조의4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서면투표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서면과 참고자료를 소집통지서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소집통지를 전자공고로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서면투표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참고자료 등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제386조의4 제3항). 여기서 전자적 방법이란 ① 양식과 참고자료에 관한 정보들이 기록된 자기디스크 혹은 CD-ROM 등을 우편으로 교부하거나, ② 정보파일에 저장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③ 주주가 전자투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들을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⁴²⁾ 즉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자료는 의결권행사양식을 포함하여 모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의결권행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참고자료의 제공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참고자료가 서면으로 제공될 경우와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될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질의 양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면일 경우에는 인쇄나 우송 등에 따른 비용 등의 문제로 전자적 방법보다는 제공되는 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결권행사방식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태도는 아닐 것이다. 특히 의결권행사방법에 관한 선택권이 회사측에 있는 경우⁴³⁾에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한 서면투표라 해서 주주가 반드시 참고자료를 서면으로만 열람해야 한다는 법도 없다. 의결권행사는

표에 관한 승인결의가 있을 때에는 재무제표 및 그에 관한 감사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2) 김영주, 앞의 책, 273쪽.

43) 서면투표는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가능하고(제368조의3 제1항,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결정은 이사회가 함), 전자투표의 허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제368조의4 제1항)는 점에서 양 제도의 선택권은 회사측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면으로 하더라도 참고자료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 그것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수요⁴⁴⁾나 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서면투표의 경우에도 참고자료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서면투표제도의 특성상 전자제공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반드시 서면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소집통지의 방법

위에서 전자제공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사전동의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집통지의 방법에 관해 사건을 언급하면, 전자제공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집통지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는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자제공제도, 즉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주주총회자료를 게재하고 웹사이트의 주소를 주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주주총회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는 소집통지에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정도만 올려도 되므로 서면통지에 따른 비용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터이고, 개인적 사정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선호하는 주주를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서면통지를 인정하는 이상은 비용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서면통지에 기재할 사항은 주주총회자료 중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회설치회사나 이사회설치회사가 아니더라도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자제공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일회 제299조 제2항), 주주의 개별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일회 제299조 제3항).

6. 용어 정리의 필요성

현행법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나 소집공고, 의결권행사, 참고자료의 제공 등에 있어서 ‘전자문서’와 ‘전자적 방법’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전자문서

44) 예를 들어 의결권행사서면을 총회입장권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면투표를 선택하면서 의결권행사서면은 소집통지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교부하고 참고자료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로는 주주명부의 작성(352조의2), 주주총회소집통지(제363조 제1항),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제366조 제1항), 의결권불통일행사를 위한 통지(제368조의2 제1항), 소수주주에 의한 집중투표의 청구(제382조의2 제2항)가 있고, 전자적 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식회사가 하는 공고(제289조 제3항), 전자투표시의 의결권행사(368조의4 제1항·3항) 상장회사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고(제542조의4 제1항)가 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자문서라는 용어와 전자적 방법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념에 관한 정의도 없다. 그리하여 전자문서의 개념에 관해 학설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정의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되고 전자적 형태로 송수신되는 문서로 출력이 가능한 정보,⁴⁵⁾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의 범위 내에서 상법의 해당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별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지는 정보 등으로 착종하고 있고,⁴⁶⁾ 전자적 방법에 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립된 개념이 없다. 최근의 전자주주총회제도의 도입 움직임과 관련하여 전자제공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V. 결론

일본의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는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총회자료를 자사의 홈페이지 등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주주에게 그 웹사이트의 주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주주총회자료를 적법하게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주주총회 자료를 조기에 충실하게 주주에게 제공하여 주주와 회사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법은 ① 전자제공에

45) 김효정,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그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116쪽.

46) 권기범, 현대주식회사법론, 제8판, 삼성사, 2021, 712쪽.

관한 주주의 사전동의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사후서면교부청구제도를 도입하였고, ②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제공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③ 주주총회자료를 주주총회 3주전까지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충실한 주주총회자료의 조기 제공이 실현된 것에 대해 기관투자자 사이에서 주주총회 관련 최근 20년간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⁴⁷⁾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장회사의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소집통지의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가 없이 전자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나(제542조의4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조차 불가능하다(제363조 제1항). 상장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 등의 활동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및 지점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제542조의4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1조 제5항)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전자제공제도에 비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러면서도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자료제공)에는 주주의 동의를 요한다. 특히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법 개정안에서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면서(개정안 제363조 제1항 단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는 주주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개정안 제363조 제1항 본문).⁴⁸⁾ 주주의 동의는 전자매체의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다른 한편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기능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일본에서 전자제공제도가 주목을 받는 이유에는 전자주주총회의 구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자제공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장소의 정함이 없는 주주총회)는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의 제도로써 2021년 6월에 도입되었는데, 이 전자주주총회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전자제공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3월 1일 이후에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모든 주주총회자료를 전자제공제도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⁴⁹⁾ 이런 점을 보면

47) 坂東照雄, “株主總會プロセス電子化の現在地—留意点と検討課題—”, 商事法務 第2351号, 2024, 12頁.

48) 법무부 보도자료,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2023. 8. 24.

49) 그래서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의 시행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전자제공조치사항의 내

일본의 전자제공제도는 충실한 내용의 주주총회자료를 조기에 주주에게 제공하여 주주와 회사간의 건설적 대화의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자주주총회의 기능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전자제공제도가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서면투표는 사실상 강제되고 있으나, 전자투표의 채택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⁵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서면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상장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는 전자투표제도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그 도입 여부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용 및 소집통지의 기재 및 기록사항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산경법시행령(제23조)과 시행규칙(제9조)의 개정이 있었다(保阪泰貴, “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総会における株主総会資料の電子提供措置等一産業競争力強化法施行令および省令の改正一”, 商事法務 第2305号, 2022, 35頁).

50) 2023년 6월 주주총회시점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3000사를 초과하고 있다(坂東照雄, 前掲論文, 15頁).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기범, 현대주식회사법론, 제8판, 삼영사, 2021.
 김영주, 주식회사법대계 II, 제4판, 한국상사법학회, 2022.
 黒沼悦郎, 金融商品取引法, 有斐閣, 2016.

2. 학술지

- 김병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33권 제3호, 2019, 299-329쪽.
 김효정,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그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97-159쪽.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7, 1-41쪽.
 森まどか, 電子提供制度下における株主総会, 商事法務 第2352号, 2024, 24-31頁.
 尾崎安央, 株主総会資料の電子提供制度, ジュリスト, 第1542号, 2020, 21-26頁.
 松井秀征, 株主総会資料の電子提供制度, 商事法務 第2230号, 2020, 35-43頁.
 商事法務研究会編, 2019版株主総会白書, 商事法務 第2216号, 2019.
 商事法務研究会編, 2023年版株主総会白書, 商事法務 第2344号, 2023.
 渡辺諭, “商事法をめぐる動向”, NBL 第1209号, 2011, 14-15頁.
 渡辺諭 外3, “会社法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の解説 [V・完]”, 商事法務 第2254号, 2021, 14-24頁.
 林良樹/白木絵利加, “電子提供制度下の役員選任議案の留意点一今年6月総会の選任状況を踏まえて一”, 商事法務 第2311号, 2022, 76-89頁.
 竹林俊憲 外4, “令和元年改正会社法の解説”, 商事法務 第2222号, 2020, 4-14頁.
 坂東照雄, “株主総会プロセス電子化の現在地一留意点と検討課題一”, 商事法務 第2351号, 2024, 12-21頁.
 保阪泰貴, “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総会における株主総会資料の電子提供措置等”, 商事法務 第2305号, 2022, 33-37頁.

3. 기타자료

한국ESG기준원, ESG 모범규준, 2021.

법무부 보도자료,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2023. 8. 24.

東京証券取引所,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 会社の持続的な成長のとは中長期的な企業価値の向上のために, 2018. 6. 1.

『責任ある機関投資家』の諸原則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投資と対話を通じて企業の持続的成長を促すために—, 2017. 5. 29.

内閣官房, 未来投資戦略二〇一八～『Society 5.0』『データ駆動型社会』への変革, 2018. 6. 15. 閣議決定.

[Abstract]

Japan's Electronic Provision System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ata and its Implications

Kwon, Jong-Ho*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electronic provision system fo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ata introduced by Japan as a result of th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in 2019.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promote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by providing data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early. This system recognizes that data f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have been provided by uploading data f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n the website of the company's website, and notifying shareholders in writing the address of the website.

In the past, individual shareholders' consent was required in advance to provide data 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shareholders electronically, such as the Internet, but the revision allowed the company to provide data 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shareholders using the Internet without the individual consent of shareholders. The website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ata should be uploaded three weeks before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o that it can be provided a week earlier than before. In consideration of shareholders who have difficulty using the Internet, the company must issue data 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writing if there is a request from shareholders, and the use of the system is mandatory for listed companies.

According to statistical data 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March 2023, which is the first time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the utilization rate of the electronic provision system has improved dramatically, and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provide data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earlier than the legal deadline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the request for issuance in writing is limited to a very

*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

small level.

In Korea, when appointing directors and auditors at listed companies, there is a system similar to that of Japan's electronic provision system, especially with respect to data on the activities of outside directors, but its scope is very limited, and notification by electronic document requires the consent of shareholders. In Korea, it is difficult to provide data 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using the Internet website, even with the consent of shareholders.

Japan's electronic provision system provides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ata through the company's Internet website, which has the advantage of saving money from printing or mailing, as well as sending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early at low costs. The latter advantage is importan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at it secures time for analysis of agendas. Since the electronic provision of data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very important for the functionalization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efficiency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electronic provision system in Korea,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listed companies are introducing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Key Words]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ata, electronic provision system, electronic voting system,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written issuance request system